

대전지방법원 2018. 11. 22 선고 2018가단1771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

피고삼일건설기업 주식회사(변경전:삼일방수기업 주식회사)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02. 10. 30. 접수 제73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박사랑

별지